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노후 생활이 걱정되어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3층 연금체계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1층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이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1층 :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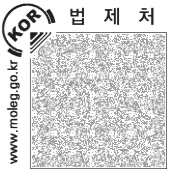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2층 :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3층 : 개인연금제도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운용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안내 참조)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노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출생연도	1952년 이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1969년 이후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다음의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출생연도	1952년 이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1969년 이후
지급개시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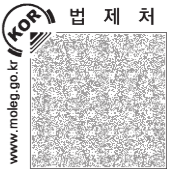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노령연금 수급절차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이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 본문).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 직장을 옮기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제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 ✔ 국민연금(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 ✔ 군인연금: 20년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연계신청 및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에 따른 재직(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연계신청을 한 사람이 연계기간이 10년(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이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 연계급여는 퇴직일, 출생연도 등에 따라 수급권에 변동이 있으며,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및 제7조).

또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기초연금 수급절차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포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및 제7조).

또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기초연금 수급절차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포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부모님께서 은퇴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계신데, 이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

대상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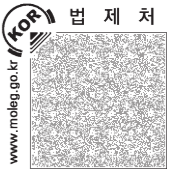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참조).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2) 참조).

담보주택 거주 의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참조).





주택연금 지급금액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1항).

※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신청-신청안내 참조).

※ 그 밖에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노후연금제도, 노후연금, 노후준비, 연금제도, 3층연금제도, 공적연금, 노령연금, 직역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금연계,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 주택연금제도, 부동산연금제도